

2023년도 한-UAE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UAE 간 상호 방문연구 및 연구자 교류활동과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자 『2023년 한-UAE 공동연구사업』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8월 25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한국과 UAE 간 방문연구 및 연구교류 등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과학 기술 협력을 증진

□ 사업내용

- 사업형태 : 공동연구사업
- 지원분야 : 청정에너지, 정보보안, 바이오헬스
- 지원기간 : 2년 (2023.10.01.~2025.09.30.)
- 지원규모 : 3과제 이내, 과제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지원

기간 및 연구비	총	24개월 (2023.10.01. ~ 2025.09.30.)	100백만원
	1차년도	3개월 (2023.10.01. ~ 2023.12.31.)	12.5백만원
	2차년도	12개월 (2024.01.01. ~ 2024.12.31.)	50백만원
	3차년도	9개월 (2025.01.01. ~ 2025.09.30.)	37.5백만원

※ 상기 연구기간 별 연구비는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- 지원내용 : 연구개발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경비 등

※ 한-UAE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하되, 한국측만 연구비 지원

※ 연구개발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에 따라 계상하며, 간접비는 직접비의 5% 이내로 계상

2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신청자격

○ 주관연구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

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 - 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-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-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- 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- 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- 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- 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

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□ 신청 제한

-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
 -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 -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
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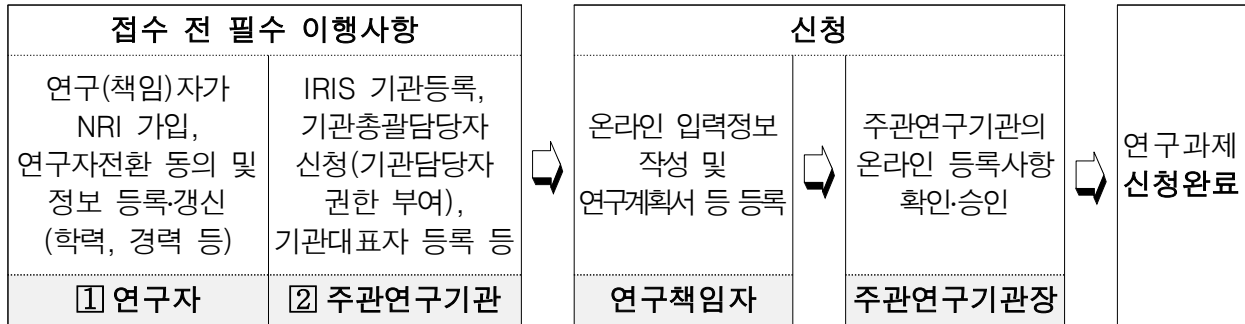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
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본 사업은 ‘연구과제 수 상한제(3책 5공)’에 해당하지 않음
 - (유사과제 신청 제한)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-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검토
- (중복 신청 제한)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

3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2023년도 한-UAE 공동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-R&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*, <https://www.iris.go.kr>)을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
- 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 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>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○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탈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○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 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 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

4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(신청마감일)	2023.8.25.(금) ~ 2023.9.25.(월) 18:00까지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	2023.8.25.(금) ~ 2023.9.26.(화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

- **연구책임자** 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**주관연구기관** : [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**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**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□ 제출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1부 ([붙임1] 참조)
- 상대국 연구자의 연구참여 의향서(LoI) 1부 ([붙임2] 참조)
- 신규과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([붙임3] 참조)

※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, 개인정보·과제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/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
※ 기타 증빙자료는 한국측 참여 연구원만 제출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
-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
※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

5. 평가체계

□ 평가절차



- 요건검토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·단체·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
- 선정평가 :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
- 선정공고 :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, 과기부(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) 최종확정

※ 상기 평가절차와 방법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평가항목(안)

- 과제 의 사업 합목적성 및 창의성,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
- 과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충실성
- 국내/상대국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
- 양자 간 상호보완성 및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
-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

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6. 향후 일정

일정	추진내용
2023.8.25.(금)~9.25.(월) 18:00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3.8.25.(금)~9.26.(화) 18:00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
2023.10월 초~10월 중	선정평가 및 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심의
2023.10월 말	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(연구 개시일:10.1)

※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7.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“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
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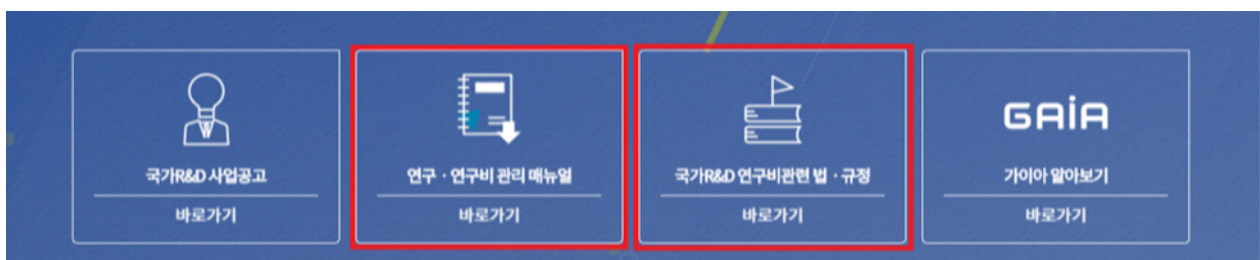
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- 법·규정·규칙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 →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’,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관련 확인
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

□ 문의처

- ① (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- ② (사업·평가 관련 문의)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
 - 황수정 연구원 : 02-3460-5728 / jung@nrf.re.kr

- 붙임 1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
2. 상대국 연구자의 연구참여 의향서(LoI) 양식 1부
3. 신규과제 기타 증빙 양식 각 1부. 끝.